

# 「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첨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5. 22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각 읍·면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복지·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원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단체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경비 등 지원 및 정산 절차 명확화(안 제5조, 제6조)
- 단체 경비 및 교육 관련 경비 사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)
- 특별방범활동기간 중 활동비 지급 신설(안 제4조제3항)
- 중요재산 관리조항 신설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서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하고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원들의 복지 및 사기 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지원 등)에서 직무경진대회, 체육대회, 선진지 견학 등 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와 대원의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

교육, 성인지교육 등의 교육·훈련 경비, 특별방법활동 기간에 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함.

- 안 제5조(지원 절차 등)에서 방법대 및 연합대가 경비 지원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음.
- 안 제6조(정산)에서 경비의 지원을 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산절차를 명확히 함.
- 안 제8조(중요재산의 관리)에서 단체가 관리하는 중요재산 파악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출서식을 신설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 및 평창군의 안전을 도모하고, 보조금 정산 절차 및 중요재산의 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(이하 "자율방범활동"이라 한다)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조(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연합대"라 한

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  2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  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  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**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**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(이하 “중요재산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~ ⑤ (생략)